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미부과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군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하고,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며,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부의무자는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과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며, 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균등하게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과는 2005. 9. 8. ○○군 ○○○면 ○○리 및 ○○리 일원에 조성면적 306,426㎡에 주택 1,776세대(단독 1,012세대, 공동 764세대) 건설을 위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후 ○○군 ○○과로 공고 및 인가조건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인가조건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 ○○과는 2006. 2. 7. 울산광역시 ○○○○과 등 4개 기관 및 부서에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승인’을 통보하였다.

이후 ○○○○○환경청은 2016. 7. 4. 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울산광역시 ○○○○과 및 ○○○○과, ○○군 ○○○○과에 통보하였다.

울산광역시 ○○○○과는 2016. 7. 5.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군 ○○○○과로 통보하면서 위 개발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미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사업시행 전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 ○○○○과는 2016. 7. 16.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결과 및 검토 의견을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및 울산광역시 ○○○○과로 통보하였고, 의견서에는 개발사업 착공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개발사업 승인 이후 사업 지연 및 수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16. 7. 20. ○○군 ○○과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정부합동감사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착공 시 부과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후 ‘부담금’이라 함)의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군 ○○○○과는 2016. 7. 20. 위 개발사업 착공 후 2018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아래 [표]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226백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미부과 현황

구분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발생량	1.704톤/일	1.397톤/일
부지 매입 비용	322,602천원 $4,221\text{㎡}(\text{소요부지}) \times 76,426\text{원}/\text{㎡}(\text{조성단가})$	
시설 설치 비용	903,205천원 1) 소각시설 : $3.16\text{억원} \times 1.2 \times 1.704\text{톤}$ 2) 음식물처리시설 : $1.84\text{억원} \times 1.0 \times 1.397\text{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225,807천원 $322,602\text{천원}(\text{부지 매입비}) + 903,205\text{천원}(\text{시설설치비})$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군 ○○○○과는 사업시행자의 착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설치비용을 부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공람결과 및 검토의견을 통보하면서 착공 전에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관리부서인 ○○군 ○○과에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설치비용 부과 부서인 ○○○○과에는 착공 사실 및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주)에서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2016. 7. 22. ○○군 ○○○○과로 제출하면서 공사실시기간을 2016. 7. 29.부터 2020. 6. 30.까지 명시하였고, 2016. 7. 28. 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관련 신고증명서와 공사 중 준수사항을 ○○○○○○(주)에 통보하였다.

또한 ○○군 ○○○○과는 착공일로부터 불과 15일 전인 2016. 7. 5. 울산광역시 ○○○○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미납금 및 가산금을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은 점, 해당 개발사업이 3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인 점, 2016. 6. 14.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군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설치비용 부과 부서로서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군 ○○○○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사업인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설치비용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착공 시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2006. 4. 6. 최초 착공 이후 약 12년이 경과한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군수는

[시정]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설치부담금) 1,226백만원 부과 및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